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0. 12. 11.>

#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

접수번호			접수일		처리기간	149	(앞쪽)	
신청인	성명 <b>홍길동</b>			주민등록번호 123456-7891234			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 010-1234-5678			전자우편주소 mailjuso@gmail.com				
	직장명			우편물 수령 [√] 가택 []직장 []직접수령				E.
	주소 (자택) <b>경산시</b> (직장)	진량읍 [	H학로 1386				사진 부착 또는 0미지삽입필수 3.5cm ×4.5cm	
신청구분	[√ ]신규		[ ]승급		신청등급		[]1급	[√ ]2급
LOTE	구분		기간		학교명			전공명
최종학력	[ ]박사 [ ]석사 [√ ]학사 [ ]전문학사		[ 2017.03.03 ]부터 [ 2021.02.20 ]까지		한국대학교		○○चेय	
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	교과목이수학교 [ 대학원(석		] []		[ ] 전문대학	[√ ] 평가인정 학		[] 기타()
	필수 교과목	[√]사회복지학개론		[√]사회복지법제와 실천		천 [√]	[√] 사회복지실천기 <b>술론</b>	
		[√] 사회복지실천론		[√] 사회복지정책론			[ <b>√</b> ] 사회복지조사론	
		[√] 사회복지행정론		[√] 사회복지현장실습		[ <del>\</del> ]	√] 인간행동과 사회환경	
		[√]지역사회복지론		[ ] ] ] ] [ ] [ ] ]		7=1-	1 - 1 - 1	
	선택 교과목	[ ]가족복지론		[ ]가족상담 및 가족			[ ]교정복지론	
		[ ]국제사회복지론 [ ]빈곤론		[ ]노인복지론 [ ]사례관리론			] 복지국가론 	
		[√]사회보장론		[_]사데된니 <del>본</del> [√]사회복지역사			]사회문제론 ]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	
		[ ]사회복지와 인권			[V]사외복시역사 []사회복지윤리와 철학		]사회복지자 군와다항정 ]사회복지자료분석론	
		[ ]사회복지지도감독론		1	]산업복지론		[√] 아동복지론	
		[]여성복지론		]	[]의료사회복지론		[ ]자원봉사론	
		[√] 장애인복지론		]	[ ]정신건강론		[√] 정신건강사회복지론	
		[ ]청소년복지론		[	[ ]프로그램 개발과 평가		[]학교사회복지론	
		기간			실습기관	기관실습 지도	가 실	습세미나 교수
	사회 <del>복</del> 지현장실 습	[ <b>2018.07.02</b> ]부터 [ <b>2028.07.27</b> ]까지			한국노인복지관	나복지		김교수
		1 20	20.07.27 171	~1				

1. 본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결사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(확인 [√])

#### <결격사유>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
- 3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4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- 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 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2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

2022년 1월 4일 इंग्रह कि कि

# ★ 신청서 작성 시 〈수기작성〉 및 〈워드(타이핑)〉 모두 가능

다. 신청서에 기재되 정보를 기준으로 자격증이 발급되어 발송처리 되므로 반드시 정자로 표기 요망

### 【신청인 정보】

- ▶성명, 주민등록번호 기입 ※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첨부
- ▶ 외국인의 경우 성명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
- ▶ 자택주소, 직장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 **※우편물 수령지 반드시 체크요망**
- ▶ 직장명, 직장주소는 해당자만 기재
- ▶상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
- ▶ 전자우편주소란에는 이메일(e-mail) 기재

### 【신청구분】

- ▶신규/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
- ▶승급/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(2급)을 취득한 이후 국가시험 합격자

【신청등급】 ▶ 1급(국가시험 최종합격자만 신청가능) ▶ 2급

#### 【최종학력】

- ▶구 분/ 학위증명서(졸업증명서)상 학력 선택
- ▶기 간/ 입학년월일과 졸업년월일 기재
- ▶ 학교명/ 학위증명서(졸업증명서)의 학교명 기재

※학점은행기관 학위취득자(졸업)의 경우 〈국가평생교육진흥원〉으로 기재

#### 【사회복지번정 교과목 이수여부】

- ▶ 교과목이수학교: 성적증명서의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 선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는 (평가인정학습과정) 선택
- ▶ **필수교과목 및 선택교과목**: 성적증명서의 이수한 과목명 선택

# 【사회복지현장실습】

- ▶ 기간, 실습기관, 기관실습 지도자, 실습세미나 교수 기재
- ▶ 2020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과 승인된 실습지도자에게서만 실습 가능

#### 【결격사유여부】

▶관련 법률에 의해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하며, 조회 결과에 따라 자격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
## 유의 안내

- ▶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후 14일(근무일기준) 이내 발급이 됩니다. 단, 상반기(2~4월), 하반기(8~9월) 졸업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이 증가하는 기간에는 자격증 접수 시 발급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▶ 결격사유 조회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자격증 발급과 관 련하여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▶관련하여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자격증 발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〈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의거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〉
- ▶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자격증 신청서와 제출 서류의 성명,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될 경우 기본증 명서(상세) 추가 제출을 통해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- ▶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▶최종학력의 경우 사회복지전공과 무관하여도 제출 가능. 단.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증명서는 인정 불가
- ▶ 학점은행제시간제 등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「학점인정등의법률」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로 제출 가능
- ▶국기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2019년도부터 시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성적증명서의 이수 년월일이 2020년으로 확인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(평생교육원, 학점은행기관)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2019년부터 해당 교괴목을 수강한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함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